

예 산 총 칙

2012년도 추경 4 회

제 1 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21,055,581	9,631,667
일반회계		275,456,420	8,263,693
특별회계		45,599,161	1,367,975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특별회계 주차장사업특별회계 공업단지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동두천시양주권광역자원회수시설설치임시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35,429,867	1,062,896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4,498,789	734,964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0,931,078	327,932
	기타특별회계	10,169,294	305,079
	주택사업특별회계	9,700	291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076,391	32,292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특별회계	146,204	4,386
	주차장사업특별회계	801,635	24,049
	공업단지특별회계	25,425	763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533,542	16,006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273,132	8,194
	동두천시양주권광역자원회수시설설치임시특별회계	7,262,388	217,872
	기반시설특별회계	40,877	1,226

제 2 조 세입 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327,354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2,2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8 조 2012년 제4회 추가경정(최종)예산 성립후 교부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간주처리 한다.